

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제11차 통합서비스지원분과 회의록(11월)

일 시	2014. 11. 5(화) 10:00~12:00	기록	임복희	확인	임유정, 이인숙	
장 소	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회의실					
참석자	총 18명중 15명 참석 83.33% -공공 1/3, 민간 14/15					
	임유정	사회복지과 휴먼복지지원팀장	○	이인숙	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	○
	김은신	연무사회복지관 과장	○	김혜란	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가정간호팀장	○
	김경순	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	○	김세련	무봉종합사회복지관 팀장	○
	김소현	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	○	박명래	수원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(드림스타트팀장)	×
	김윤희	수원 YWCA 소규모요양시설장	○	박희진	우만종합사회복지관 과장	○
	김진희	사회복지과 휴먼복지지원팀 주무관	×	장홍석	영통종합사회복지관 팀장	○
	박명옥	마음샘정신재활센터 사무국장	○	하경희	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	○
	박윤미	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팀장	○	허승연	수원시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장	○
	이성은	버드내노인복지관 과장	×	김미호	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	○
			임복희	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팀장-배석	○	
회의주제 및 안건	<p>1] 회의</p> <p>1. 공유사항</p> <p>1) 정책변동 및 기관 행사 등 공유</p> <p>2) 전차회의결과 공유</p> <p>2. 논의사항</p> <p>1) 2015년도 시행계획 모니터링</p> <p>3. 차기 회의일정 논의</p> <p>2] 자체 학습 :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- 김미호(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)</p>					
회의결과	<p>1] 회의</p> <p>1. 공유사항</p> <p>1) 정책변동 및 기관 행사 등 공유</p> <p>- 협의체 실무협의체회의 : 11/20(목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대표협의체회의 : 11/25(화)</p> <p>2) 전차회의결과 공유</p> <p>- 이의없음</p>					

2. 논의사항

1) 2015년도 시행계획 모니터링

사업번호	구분	사업명	실무분과 모니터링 결과	사업팀
10-4	지속	지역기반 사례관리 강화	(2) 사업개요 - 사업기간, 사업대상 명기 (3)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- 4개년 계획상의 내용으로 명시 (4) 사업내용: 자원발굴 및 연계 실적, 사례관리수 -> '자원발굴 및 연계', '사례관리' 로 변경 (7)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-'사례관리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80%유지' 추가 -통합사례회의 등 개최, 통합사례관리 건수는 (4)활동에 있음으로 제외	사회복지과 휴먼복지지원팀
10-5	지속	수원시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	(2) 사업개요 - 사업기간, 사업대상 명기 *정책제안의 기준 : 신규사업제안 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체계 변경(체계화) 등 포함 *사업부서에서 요청한 정책제안수의 변경은 2015년 시행 과정을 보고 판단 필요	사회복지과 복지자원관리팀
11-1	지속	수원시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	(2) 사업개요 - 사업기간, 사업대상 명기 (3)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수정 (4) 사업내용 : 등록자원수, 정보이용자수 → 수 제외 (10)사업 권고조정 내용 : 예산 변동 사항 명기	사회복지과 복지자원관리팀

㉔ 자체 학습 :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

- 김미호(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)

* 세부내용 강의자료 참고

○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법적 근거

- 복지법 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

○ 아동학대의 이해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동학대사건의 처리 협력 체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동보호전문기관, 경찰, 검찰, 법원, 지자체, 유관기관 ○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: 신고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 ○ 경찰의 업무 : 수사, 긴급임시조치 집행, 임시조치 신청 ○ 아동학대 서건 절차 흐름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해아동과 행위자에 대한 개별 절차 ○ 응급조치(아동학대 처벌법 제12조) ○ 긴급임시조치(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) ○ 임시조치(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, 15조, 19조) ○ 피해아동보호명령(제46조 ~ 49조) ○ 아동보호사건의 의의 : 보호처분 1호~8호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차기 일정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12월 통합서비스지원분과 회의 일시 : 2014. 12. 2(화) 11시 장소 :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</p>